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의안 번호	1675-1
----------	--------

발의연월일 : 2020. 12. 11.
발의자 : 신성봉, 박경흠, 문희성,
권태호, 노세영(5명)

1. 제안이유

가.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제5조제1호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과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 제5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우선 지원과 상충되어 지원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조건부가결”의 심사결과 문안을 바꾸고자 번안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중 “우선지원” 삭제(안제5조제1호)

3. 원안·번안 대비표 : 따로 붙임

4.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 제출일자 : 2020. 11. 6.(금)
- 제출자 : 중구청장
- 위원회 회부일자 : 2020. 11. 6.(금)
- 위원회 심사일자 : 2020. 12. 7.(월)
- 심사결과 : 원안가결(조건부 가결)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번안한다.

안 제5조제1호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지원” 중 “우선지원” 삭제

원안·번안 조문 대비표

원 안	번 안
제5조(지원의 범위) 구청장은 경비원 인권 보호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u>우선지원</u>	제5조(지원의 범위) ----- ----- ----- ----- 1.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지원 조례」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번안동의 서명날인서

○ 「울산광역시 중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번안

의원성명	서명	비고
		발의
		찬성
		”
		”
		”